

의안 번호	9
----------	---

2026. 7.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법령상 필수 위원회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법령상 정식 명칭에 맞게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며,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변경: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예산성과금 심사 기능을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창원시 소속 위원회에 관한 기본 조례인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문구를 삭제하고, 입법례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대행 및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안 제4조 제2항, 제8조,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 1)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3, 제48조, 제60조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68조
- 3) 「지방자치법」 제130조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2026. 5. 29.~6. 18.)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5) 현행 조례: 붙임 3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창원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처리하기 위하여”를 “처리할”로,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을 “두되, 간사는 예산 총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원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창원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 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창원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u>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창원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창원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u>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 제2조(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8조(간사) -----
-- 처리할 -----
두되, 간사는 예산 총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삭 제>

<삭 제>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
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
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
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
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 ⑧ (생 략)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 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⑤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창원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창원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용상황 정기공시를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